

정보교류 차단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24. 5. 21.

제1절 정보차단벽

제1조(목적) ① 본 지침의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5조(정보교류의 차단) 및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방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부통제기준과의 관계 등) ① 본 지침은 당사 내부통제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하여, 본 지침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특칙으로서, 자본시장법 및 기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이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설정 및 미공개중요정보의 식별 기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차단한다. 단, 투자유의 종목, 시장경보 종목과 같이 시장이벤트 내지 크레딧 이벤트 등이 발생하거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이슈 등으로 매스미디어에 회자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보유 여부나 대처 방안 등에 관하여 판매회사 및 투자자에게 정보교류가 필요한 경우는 이 지침과 상관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 내역과 매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법규의 제·개정이나 업무영역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이 지침의 목적상 정보교류의 차단이 필요하다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정보
- ② 제3조 1항 1호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식별기준은 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즉, 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되어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써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 ③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④ 제1항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1개월)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⑤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 제 58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해제 요청서” [별표1]를 작성하여 위험관리실에 통보하고, 위험관리실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분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의 지정) ① 업무상 제3조 1항 각호에서 정하는 정보를 접하는 본부 또는 팀을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부문으로 설정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 본부 또는 팀에 속한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 관련한 법규와 사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 : 위험관리실

2.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 : 준법감시인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 각 부문 본부장

② 회사의 조직개편이나 1항 각호의 명칭 등의 변경이 생길 경우 준법감시인은 이 지침의 변경이 없어도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운영) ①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정책이나 지침을 총괄하는 정보교류 통제 담당 책임자로서 준법감시인을 지정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정보교류 통제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지정

2. 정보교류 차단 부문 설정 및 부문별 책임자 지정

3. 정보교류 차단 정책 또는 지침의 관리

4. 교육 및 정보교류 차단 관련 홈페이지 공시의무 이행

5. 기타 정보교류 차단 관련 이슈 모니터링 및 조언

제 2절 사내 정보교류 차단 방법 및 예외적 교류

제6조 (정보교류 차단 일반 원칙) 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상 접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정보를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동일 부문 또는 동일 팀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면 아니 된다.

③ 모든 임직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우연히 접근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실은 1항내지 3항의 모든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절차,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사용 내역 보고 등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제7조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적 교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

성하여 5년 이상 유지·관리할 것

② 회사는 예외적 교류 허용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부문별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에게 “예외적 정보 제공 허용 승인 요청서”[별표2]를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고유재산 운용부서와 집합투자재산 운용부서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고유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2. 회사가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 설정을 위해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역할을 전제로 하는 경우

제3절 사외 정보교류 차단 및 업무집행사원 거래제한

제8조(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① 회사는 계열회사(금융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제3자에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모회사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투자자가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 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소관 부서는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타인과의 정보 공유 금지를 명확하게 기술한 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
 7.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않은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③ 제공하는 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제공목적 등에 관하여 “예외적 정보 제공 허용 승인 요청서”[별표2]를 작성하여 부문별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사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소관부서 팀장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위험관리실은 제공정보의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5년동안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집행사원의 거래제한) ①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2.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②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업무집행사원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

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그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
2.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4절 이해상충 관리

제10조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 및 이해상충의 관리) ① 모든 임직원은 이해의 상충을 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이해상충의 거래 또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임직원은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직속상사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 받은 직속상사와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해상충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조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3. 중대한 이해상충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 준법감시팀은 이해상충 보고사항 및 처리에 관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유지한다.
- ②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의 예시는 [별표3]을 참고한다.

제11조 (PEF 운용시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 및 이해상충의 관리) ① 회사는 PEF운용시 이해상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유형을 구체화하여 이해상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②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관리방안의 예시는 [별표4]을 참고한다.

제5절 기타

제12조 (임직원 교육 및 정보교류 차단 정책 등의 공개)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하여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이용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5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해제 요청서

1. 승인요청자 () 제공자 , () 수령자

2. 사내/사외 여부 () 사내 , () 사외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해제 요청 상세내역

신청인	제공부서 책임자	수령부서 책임자	준법감시인

구 분	상 세 내 역
해제하는 정보의 종류	() 미공개 주요정보 ()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 정보 () 집합투자증권, 일임,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또는 운용정보 기타 _____
해제하는 정보의 내용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해제의 목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해제의 필요성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제공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해제 요청일	년 월 일

위 정보에 대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해제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1) 해제하고자 하는 정보의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제공되는 정보자료는 별도 첨부할 것

[별표2]

예외적 정보제공 허용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자 () 제공자 , () 수령자

2. 사내/사외 여부 () 사내 , () 사외

3. 정보제공 허용 승인 요청 상세내역

신청인	제공부서 책임자	수령부서 책임자	준법감시인

구 분	상 세 내 역			
정보제공자	소속기관		소 속 팀	
	직 위		성 명	
정보수령자	소속기관		소 속 팀	
	직 위		성 명	
해제하는 정보의 종류	() 미공개 주요정보 ()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 정보 () 집합투자증권, 일임,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또는 운용정보 기타 _____			
정보교류의 허용범위	() 한정통과, () 일괄통과 ²⁾			
제공하는 정보의 주요 내용 ³⁾				
정보제공의 목적				
정보교류 방법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권한 부여 ()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으로의 편입			
	() 회의, () 유선, () 이메일, () 메신저, () 문서교환, () 직원파견 () 기타 _____			
정보제공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정보에 대한 정보교류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2)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대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요청
3) 제공하는 정보의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제공되는 정보자료는 별도 첨부

[별표3]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이해상충 유형	주요 충돌관계	업무 프로세스	이해상충 방지수단
개인투자행위	임직원 ↔ 고객	임직원의 개인투자행위	사전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 절차
선물 및 향응 수수	임직원 ↔ 고객	업무와 관련하여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준법감시인에 보고 컴플라이언스 준수 확인서 제출을 통한 자체점검
의결권 행사	회사 ↔ 고객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준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_금융투자협회)
대외활동 (정치활동 포함)	회사 ↔ 임직원	회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	사전승인
비밀정보 제공	회사 ↔ 임직원	회사정보자산의 대외 제공	사전승인
운용지시 (사전자산배분)	고객 ↔ 고객	여러 집합투자기구(계좌)의 통합 주문	운용역과 매매역 분리, 사전자산배분 확인
오류수정	회사 ↔ 고객	기준가격 산정 및 매매 등의 업무관련 오류의 수정	보고 및 수정방법 내부승인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고객 ↔ 고객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산거래	자전거래 규정 준수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고객 ↔ 고객	집합투자재산 정보의 제공	1개월이 경과한 정보의 제공 또는 사전승인
계열회사와의 거래	회사 ↔ 고객	집합투자재산 등에 대한 계열회사와의 거래	운용업무 모니터링 지속

[별표4]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관리방안(PEF 운용)

이해상충 유형	관 리 방 안
LP ↔ LP	- 회사는 특정 LP의 의사에 따라 PEF를 운용하거나 특정 LP에게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1에서 금지하고 있는 LP의 PEF 운용 관여를 차단해야 한다.
PEF ↔ 투자대상기업	- 회사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진과 해당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PEF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회사는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금액, 투자조건, 이해상충검토 내용 등 투자관련 내용에 관하여 LP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을 감독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PEF ↔ 타PEF	- 회사가 운용중인 PEF간 선,후행 투자시 LP에게 투자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전원 승인을 통해 투자집행함으로써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PEF ↔ 특수관계인	- 회사와 PEF간 거래, 임직원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 PEF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LP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5]

정보교류 차단 세부 운영 기준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주요 내용	
사내	[고유재산운용·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자문/일임업] 간	
	설치 면제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 /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등(RP매매,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위한 투자중개업 포함)을 위한 투자중개업 / 신탁업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다른 금융투자업] 간	
	설치 면제	- 기업금융업무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 - 인수·발행주선 증권에 대한 영업점의 취득 권유 -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 M&A조언 -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과정에서 그 증권을 취득시키는 업무 - 비상장기업(SPAC 포함),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및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대량매매(Block Deal)등의 방법에 의한 주식 매매 중개·주선·대리업무 - 인수업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증서를 매매하거나 이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 기업금융업무/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설립이나 운용에 관한 자문업무 또는 중개,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출자업무 - 기업금융업무/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 - 기업금융업무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제4호의3(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또는 제4호의4(프로젝트금융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에 따른 업무 / 고유재산운용업무 - 기업금융업무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인프라 투자 목적 PEF 등)의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의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 채권중개부서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업무 중 국채, 지방채, 특수채, 단기사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로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
	[조사분석업무]와 [기업금융업무] 간	
	설치 면제	금융투자분석사가 특정기업의 가치분석과 관련 없는 일반적 현황 등을 교육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계열회사 및 집합투자증권 위탁 판매계약이 체결된 집합투자업자] 간	
사외	설치 면제	- 투자자의 지위에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기 위하여 회의·통신하는 경우 - 모회사 감사 등 대표이사가 사전에 승인한 업무